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7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박성훈·이헌승·박성민

박충권 • 박수영 • 고동진

김도읍 · 임이자 · 조은희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 ②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에서 <u>같다</u>-----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 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 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 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신 설> 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 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 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 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